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802호
----------	--------

제출년월일 2026. 8. 21.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첫째아 출산가정까지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에 따른 초기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 변경 (안 제5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불임

다. 예산조치 : 2027년도 본예산 1,868,500천원 편성 예정(비용추계서 별첨)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7. 23. ~ 8. 12.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나) 경기도 : 건강증진과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산축하금

가. 첫째 자녀: 50만원

나. 둘째 이후 자녀: 100만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성명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팀장 직위·성명	모자보건팀장 최보라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의료기술서기 김은정(☎415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임신·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임신·출산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 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출산축하금: 둘째 자녀부터 100</u> <u>만원</u>	2. <u>출산축하금</u> <u>가. 첫째 자녀: 50만원</u> <u>나. 둘째 이후 자녀: 100만원</u>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5조의18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분위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기준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2장 임신·출산축하금 지원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2. 출산축하금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임신·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한다.

⑤ 신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순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등 증명서류 확인 후 지원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3.>

1.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였을 것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하였을 것

다. 지원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임신·출산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50만원

2. 출산축하금: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3.>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임신·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9조(지원대상)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 한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거주, 영주 또는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0.23.>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10.23.>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0.23.>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2. 본인부담금: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① 시장은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9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확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원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제13조(본인부담금 신청·지원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시장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한 후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14조(지급제외) 시장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10.23.]

제4장 보칙

제1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6조(지원의 중단)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첫째 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신설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소요예산: 1,868,500천원(시비 100%) * 2025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첫째아: 1,489명 × 500,000원 = 744,500,000원

- 둘째아 이상: 1,124명 × 1,000,000원 = 1,124,000,000원

○ 김포시 출생아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출생아 수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2023년	2,867	1,634	1,004	229
2024년	2,573	1,467	901	205
2025년	2,613	1,489	915	209

※ 자료출처: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출산순위별 출생 비율 참고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계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아 포함)	사회보장적 수혜금	1,868,500	1,887,000	1,905,000	1,924,000	1,943,000	9,527,500

※ 2024년, 2025년 출생아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연평균 1% 수준으로 증가 추계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법무과 협의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과장 박임순 팀장 최보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1,868,500	1,887,000	1,905,000	1,924,000	1,943,000	9,527,500
자체재원		1,868,500	1,887,000	1,905,000	1,924,000	1,943,000	9,527,500
세 출		1,868,500	1,887,000	1,905,000	1,924,000	1,943,000	9,527,500
출산축하금 지원		1,868,500	1,887,000	1,905,000	1,924,000	1,943,000	9,527,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68,500	1,887,000	1,905,000	1,924,000	1,943,000	9,527,500
	지방세수입	1,868,500	1,887,000	1,905,000	1,924,000	1,943,000	9,527,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